

# 안전규제 합리화를 기반으로 한 '09년 LP가스안전관리 정책 방향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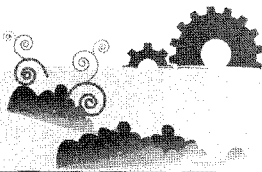
LP가스는 주로 서민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는 매년 9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8년부터 『LP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LP가스 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사고는 전년대비 55.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안전공급계약제도 개선 등 LPG유통단계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자 관리강화”라는 등 특별대책 추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LP가스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사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사고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06년 37건, '07년 36건)으로 선진 유럽과 같이 『자율 안전관리 기반』의 정착없이 이 유형의 사고율은 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자율 안전관리 기반』의 조성을 위한 제도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구분	계	사용자부주의	공급자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불량	기타
2007년	100	44	18	21	9	8
2008년	95	45	8	22	12	8
증감(%)	5.0↓	2.3↑	55.6↓	4.8↑	33.3↑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09년도에는 '08년부터 추진해온 『LPG 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의 시행성과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다음의 '09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추진목표 및 세부일정 등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LPG가스안전포럼 및 연구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정책 추진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09년도에 중점추진해 나가야 할 핵심과제는 첫째, LPG가스 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에 관한 정책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둘째, 소형 LPG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시행에 관한**

### 사항

셋째, 재래시장 LPG가스시설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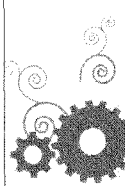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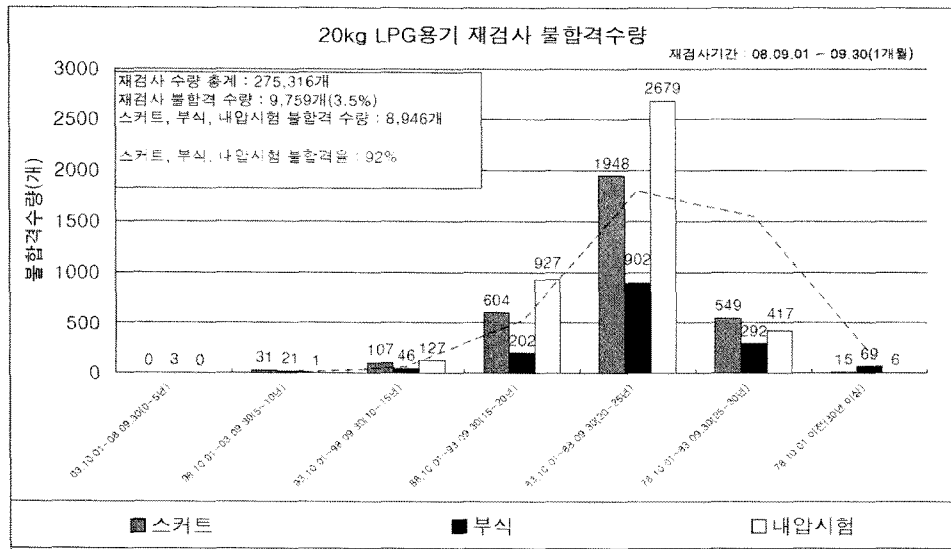
넷째, 안전공급계약제도 등 관련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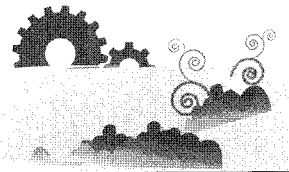
다섯째, LPG가스 안전포럼 및 안전연구회 활성화라는 5대과제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본문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 II. 본문

### 1. LPG가스 용기 재검사기간 연장

현행 LPG용기 재검사기간 관련 법규 조항은 약 30년 전인 197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 등에 의한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제품의 사용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





적 측면에서도 유통(재검)비용 절감, LPG 가격인하 등 긍정적인 유발효과를 고려할 때 재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관련업계로부터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제도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을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연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4단계(4년/3년/2년/1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검주기의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선진 각국의 재검주기의 사례를 비교, 제조·검사·유통 등 제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일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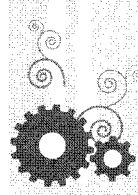
이에 정부에서는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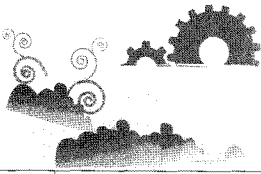
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재검사주기 연장에 관한 연구용역( 08. 4 ~11)』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LPG-용기 사용실태, 안전성·경제성 분석 및 LPG 용기 재질평가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재검사주기의 연장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 및 설문조사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사주기 연장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주기연장 방안 중 <제1안>은 “현행(3/2/1년)에서 1년씩 연장(4/3/2년)” (현행은 15년 미만 : 3년(최초 검사 4년), 15년~20년 미만 : 2년, 20년 이상 : 1년), <제2안>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20년 미만 : 5년, 20년 이상 :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제시하였으며, 그간 재검사주기 연장의 주요 보완대책으로서 거론되어 온 용기의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여 유희 폐용기 회수 및 노후 무적용기 유통차단을 통한 LP가스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세계 각국의 재검사 주기

국가	기간(t, time)			비고
	t<15년 : 3년	15≤t<20 : 2년	t≥20 : 1년	
한국	t<15년 : 3년	15≤t<20 : 2년	t≥20 : 1년	재검연장 사례
일본	t<20년 : 5년	t≥20년 : 2년		
미국	1회/5년 (수압시험실시 : 12년, 이후 7년)			유럽 : 거의 동일
영국	1회/10년			
프랑스	1회/10년			
독일	1회/10년			





향후 정부는 『재검사주기 연장 연구용역(’08.4~11) 결과』를 토대로 재검사주기 연장과 용기의 사용연한제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및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관련기관과의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충전업체 총운영 비용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LPG가스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09. 9월 이후 LPG가스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소형 LPG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

현행 규정은 모든 LPG용기(프로판)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스공급자(판매업자)로 하여금 LPG용기에 의한 가스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체의 공급자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LPG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소형용기 직판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첫단계로서 안전회계법인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소형용기 직판체제 도입 등에 연구용역(’08. 4 ~11)』을 추진하였다.

’09년 1월 현재 당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직접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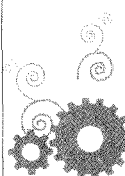
첫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용기의 경우 소비자 직접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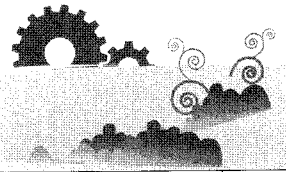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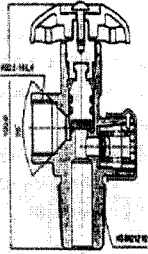
둘째, 소비자의 경우 용기자체에 의한 사고 이외의 “자기 과실 등에 의한 사고”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유럽의 경우와 같이 “안전자율관리 체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법적 Licence”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 가능토록 시장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제도의 정착시까지 일정기간(예 : 3년) 동안 충전업체 및 판매업체가 전담토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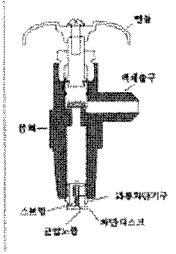
그 세부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직판이 허용되는 소형용기의 적정한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계획인데, 그 규모는 5kg 미만(충전시 10kg 미만)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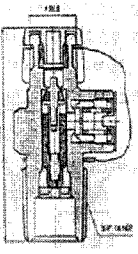


- 기존나사식
- 현재용기연결방식
- 도입시 사고발생가능성 증가
- 정부정책상 향후 교체가 예상되고 있음



- 차단기능형 밸브방식
- 07년 11월부터 가스고의누출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중임
- 차단기능이 도입되어 사고발생가능성 예방 가능
- 도입비용 4.4억 예상



- 원터치방식
- 캐비닛히터 연결방식
- 차단기능이 도입되어 사고발생가능성 예방기능
- 소비자사용편의성 높음
- 도입비용 8.2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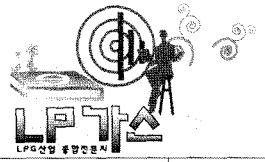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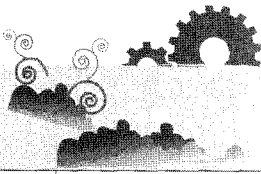
에도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의 선결과제이다. 10kg 미만(충전시 20kg 미만)의 용기를 허용하는 경우는 기존의 20kg 미만(충전시 40kg 미만) 용기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판매업자의 생존권 차원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함으로써 제도 도입 자체마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적절한 규모가 도출되면 금년 2월부터서는 「LPG가스 안전연구회 및 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유통점 허가요건, 유통점 시설기준·기술기준 신설, 압력조정기·LPG용기밸브 등에 대한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및 공급자 의무규정·안전공급계약제도·고

압가스 운반기준 및 사고책임 귀속 등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스용기의 밸브체결은 소비자의 조작이 용이한 원터치 방식에 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개선함으로써 소형용기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편의성도 제고 시켜 나갈 것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액법 및 고압가스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판매업 허가요건을 신설하고, 안전공급계약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직판체계를 불허용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빚장을 풀고, 이와 더불어 '10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안전공사·제조업계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압력조정기·LPG용기밸브 등에 대한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을 병행 추



진할 계획이다.

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빠르면 '10년 하반기 중에는 시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 정부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산 적용기간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년 말쯤에는 현행의 LP가스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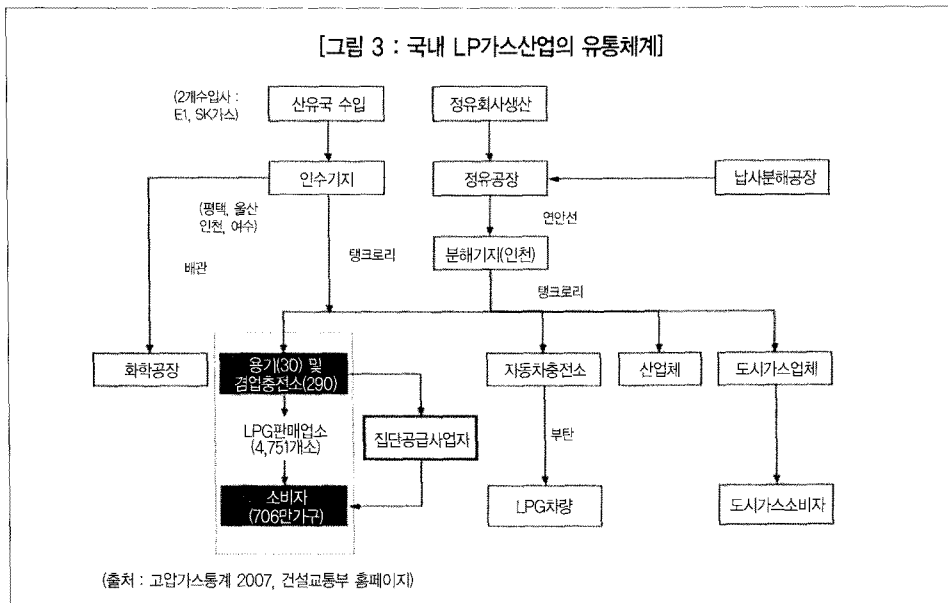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함은 현행 다단계 유통구조(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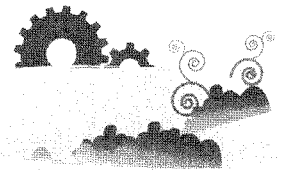
소비자가 직접 충전소, 판매소 및 유통점에서 Take-out이 가능한 일정규모 미만의 LPG소형용기를 구매하여 자기책임하에 소비자시설에 체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예 20kg, 50kg)의 용기와는 별도의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율관리 의식의 향상 및 관련규정의 정비·보완 등이 필요하다.

소형 LPG가스용기 직판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비자는 가스공급자에게 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구매·체결하는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고, 유통비용이 타 연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그림 3 : 국내 LPG가스산업의 유통체계]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판의 경우 주로 농어촌이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이나, 다단계 유통구조와 용기유통이라는 전 근대성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유통비용은 같은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대비 12배, 등유 대비 3배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에 적합한 다양한 용기의 개발, 난방용·취사용 뿐만아니라 야외용·레저용 제품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가스의 확산정책 등에 의거 침체일로에 있는 LPG가스 산업의 생존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안전성, 편리성이 보다 높은 컴포지트 용기는 소비자 선호도에 부합함으로써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기존 LPG가스 용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LPG용기 제조산업을 수출산업으

로 육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재래시장 LPG가스시설 개선 시범사업 실시

재래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사고 발생시에 대형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별 용기공급 방식(고무호스)에서 공동 저장탱크 공급방식(금속배관)으로 전면 개선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가스요금 인하를 도모하고자 LPG가스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08년도부터 추진하였다.

재래시장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결과, 가스를 사용하는 있는 재래시장 1,104개소 중에서 부적합(D·E)등급은 513개소(46%)이며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내의 점포 12,590개소 중에서 부적합은 3,504개소(27.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의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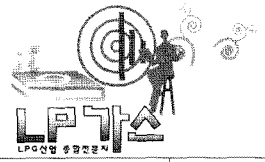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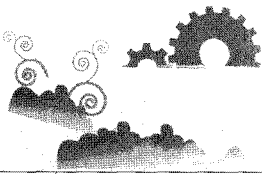
#### ♣ 난방용 연료 가격 및 유통비용 비교

구분	LPG(원/kg)	도시가스(원/㎡)	등유(원/ℓ)	비고
유통비용	599(100)	49(8)	204(34)	'08.9월

#### ♣ 재래시장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결과

구분	계	양호(A급)	안정(B급)	주의(C급)	개선(D급)	위험(E급)
계	1,104	398	112	81	52	461
등록	660	298	68	42	16	236
인정	189	35	23	15	22	94
기타	255	65	21	24	14	131





안전성 확보	편리성 향상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스 → 배관, 용기신재 → 탱크 외부설치, 원격차단장치 등을 설치</li> <li>○ 기존 용기대비 5배 이상의 안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공급(전화주문) ⇒ 가스공급자 자율적인 배달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 해소)</li> <li>○ 밸브 잠금 ⇒ 원격 차단</li> <li>○ 도시가스로 호환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구조 개선(용기 → 차량)</li> <li>○ 가스요금 절감 - 점포 당 : 약120만원/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절감액(점포)</th> <th>절감(%)</th> <th>총점포수</th> </tr> </thead> <tbody> <tr> <td>10만원/월</td> <td>약20%</td> <td>12,590</td> </tr> </tbody> </table>	절감액(점포)	절감(%)	총점포수	10만원/월	약20%	12,590
절감액(점포)	절감(%)	총점포수						
10만원/월	약20%	12,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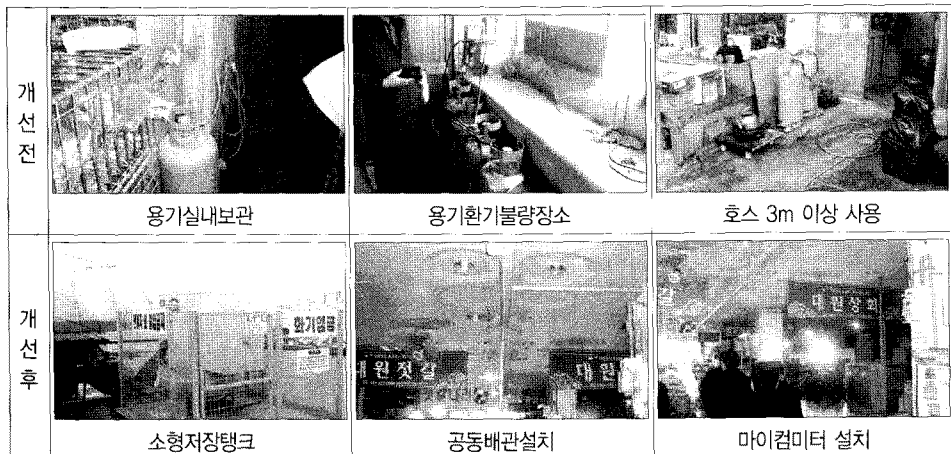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무질서한 “가스통 및 낡은 호스배관”을 “소형저장탱크, 공동배관, 다기능가스 안전계량기”로 전면 개선함으로써 기존 용기공급 대비 5배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벌크로리에 의한 공급으로 점포당 120만원/년의 가스요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방법은 3개 시장에 대하여 12,900만원(1개시장-4,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 비용은 가스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로 Matching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Matching 비율은 가스안전공사 60%, 지자체 30%, 시장상인회 10%이며, 기관별 Matching(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시장상인회 부담금액은 영세상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08년 시범사업의 예에서도 보듯 관할 지자체 또는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는 방안(남광주시장 : 가스공급자 부담, 동마산시장 : 관할 지자체 부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시장은 정부, 공사, 관련협회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시설개선 사업 계획, 예산 홍보효과 등을 고려, 경쟁평가하고, 당해 시장은 지방서 등







남광주시장 준공식



동마산시장 준공식

에 따라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2008년 시범사업(남광주, 동마산시장) 결과, LP가스시설 사용환경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대형 사고 예방 및 가스요금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거의 모든 상인들은 개선된 가스시설 환경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수요가 당초 39개소에서 53개소로 대폭 증가하는 등 점차 시설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향후 기 완료한 2008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09년 중에 에특예산의 확보를 지속 추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3개년사업(10~12)』이 성공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4. 안전공급계약제도 등 LP가스관련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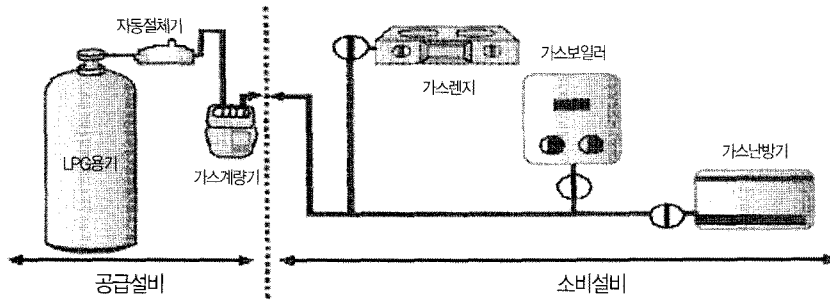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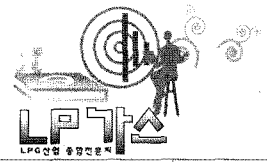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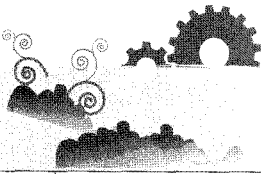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 불가결한 안전관리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한 등 LP가스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의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준수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네거티브 규제는 확고한 검증 및 보완조치 후 선별적으로 완화해 갈 것이다.

우선 LP(용기)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소량 공급 및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용기에 의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해지시 철거비용 산정방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가스공급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철거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비용산정은 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철거비용의 산정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기운반차량 및 벌크로리는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모두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의무



화하여, 현행법령에서는 충전사업자는 벌크로리를 “보유”토록, 판매사업자는 용기운반차량 및 벌크로리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보유” 및 “확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이를 약용하여 지입차량에 의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연료전환(LPG→LNG)에 따른 배관의 철거 및 마감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법, 액법 등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연료전환시 부주의한 행위에 의거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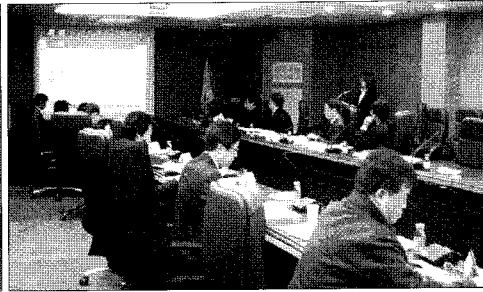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경우에는 현행 0.5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용기대비 안전성이 우수한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활성화하며,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KS 가스용품의 경우에도 검사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하고, 용접 절단용 조정기에 대하여는

역화방지장치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소비자 과실의 경우에도 공급자가 가입한 가스사고책임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5. LP가스 안전포럼 및 안전연구회 활성화

LP가스 안전관리 정책과제 발굴·논의를 위해 '07.6월부터 정부, 학계, 업계, 공사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LP가스안전포럼과 LP가스 안전관리 시책 발굴·논의를 위해 '07.11월부터 정부, 업계, 공사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무회의체인 LP 가스 안전연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정부 정책방향,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및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제도개선 방향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LP가스안전포럼과 LP가스 안전연구회가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소형 LP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술적 검토사항 및 안전공급 계약제도의 개선 등 안전관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점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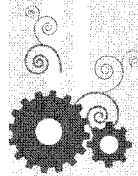
###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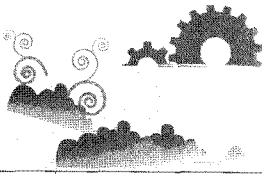
LPG는 보급과 동시에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서민 연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LP가스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국가경제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형 가스사고 이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술발전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

르렀으나, 그에 따른 안전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LP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 및 중점 시행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경제 및 가스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09년도에는 『자율안전관리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고,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LP가스 관련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선진 유럽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 유럽의 LP가스 유통체계**

**1. 영국**

**가. LP가스(용기) 유통체계**

- 생산(차기지) → 배송센터 → 용기충전소 → 판매점(BP등 사업자의 딜러) 또는 소매업소(유통점) → 소비자 순
- ※ LPG(용기) 공급물량은 약 120만톤(우리나라의 1/7수준)으로 난방 및 상업용이 80%를, 레저용은 약 20%를 차지

**나. 소형용기(18kg미만) 관련 현황**

**1) 용기형태 및 밸브 종류의 다양성**

- 용기 형태
  - 실내용 히터(7kg, 13kg : 부탄), 난방용(6kg, 11kg : 프로판), 야외용(5kg, 10kg, 컴포지트 용기)
  - \* 프로판은 실외에서만 사용 가능, 부탄은 실내/실외 모두 사용 가능
- 밸브의 종류
  - 프로판 : 18kg이상은 Handwill(국내방식), 18kg미만은 Clip 방식(원터치), 부탄 : Clip 방식(원터치)

**2) 소형용기 구매형태 및 사고시 책임**

-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구매하기도 하나, 주로 소매업소(약 2만개)에서 직접 구매
- \* 소매업소(유통점)는 주로 소형마트, 주유소, 캠핑가든 등
- 사고발생시, 용기자체 문제의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

**3) 판매사업 허가 및 용기관리 체계**

- 판매사업은 지방정부의 Licence를 받으면 가능(총 보유용량 330kg 이상의 경우는 요건이 매우 엄격)
- 판매사업자는 실외에 시건장치하여 보관토록 의무화, 특히 소매점은 별도 장부를 두고 소형용기 구매자의 이력을 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은 충전소 경우 법적 의무이나, 유통점 등은 제한없음.

**4) 용기의 재검사 관련사항**

- 재검사는 제3의 공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주기는 10년
- 법적 사용연한은 없으나, 30년 이상의 용기는 자체 폐기

**5) 기타 용기 소유권 및 사후관리책임 등**

- BP 등 사업자는 용기의 투자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용기의 소유권도 보유
- 판매가격은 최초 구입시 일정액을 예치, 그 이후에는 가스가격만을 지불하고 새로운 용기로 교체 구입
- \* 소비자 차량 적재, 운반시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운반기준은 없음

**2. 프랑스**

**가. LP가스 유통체계**

- 전반적인 유통체계는 영국의 경우와 대동소이
- 유통에 있어 별다른 제약없이 다양한 채널로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종인 소형용기는 용도 및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
- \* 대도시는 대부분 PNG를 사용하고 PNG가 보급되지 않는 외곽 지역에서 LPG사용

**나. 소형용기 유통현황**

- 주유소가 접근성 면에서 영국보다 우수하여 소형용기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소형용기는 순수 레저용으로 크기 및 규모가 크지 않음.
- 다만, 영국과는 달리 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 규모의 보증금(6kg 또는 13kg 용기 9유로)을 받고, 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LPG의 자체의 가격은 단일가격으로 거래
- \* 대형 할인매장(까르푸)에서는 200g ~ 2kg까지의 소형용기를 주로 취급

**다. 기타 사항**

- 용기 소유와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자이고,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며, 용기 재검사기간은 10년

